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5-152 관련
----------	-----------

발의년월일 : 2025. 12. 1.

발의자 : 행정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언론매체 의뢰 광고물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가 필요함에 따라 심의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심의 제외범위를 단순한 정보 전달물로 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홍보물 심의 제외 대상에 언론매체 의뢰 광고물을 삭제하고 단순한 정보 전달물로만 규정함. (제6조제2항제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단순한 정보 전달물(행사안내·계도·홍보를 위한 현수막, 포스터, 판촉물 등)과 언론매체 의뢰 광고물”을 “행사안내·계도·홍보를 위한 단순한 정보 전달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사전심의) 발행 부서는 홍보물 제작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제출하여 홍보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물 심의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법령에 따라 명칭이나 그 발행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홍보물 최초 발간 시의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홍보물 제작비용이 100만 원 이하인 홍보물 그 밖에 위원회가 	<p>제6조(심의 대상) ① 발행부서가 홍보물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는 홍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민을 대상으로 구 전 지역에 배포하는 홍보물 구민의 생활과 사회적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홍보물 그 밖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홍보물 	<p>제6조(심의 대상) ① (개정안과 같음)</p>

지정하는 홍보물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물 심의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 문서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업무 편람, 내부 회의자료
3. 관련 법령에 따라 명칭이나 그 발행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홍보물
4. 최초 발간 시의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홍보물
5. 단순한 정보 전달물(행사안내·계도·홍보를 위한 현수막, 포스터, 판촉물 등)과 언론매체 의뢰 광고물
6.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

②-----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행사안내·계도·홍보를 위한 단순한 정보 전달물
6. (개정안과 같음)